

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연 천 군 의 회 의 장 김 미 경

2024년 9월 23일

연천군의회 예규 제6호

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4조)
- 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5조)
- 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2)
- 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조의2)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의2)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2조의2)

사. 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2조의3)

아.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9조)

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0조)

3. 개정 조례안 : 불 임(신·구조문대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해당없음

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5호”를 “별지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부의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 ⑥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

함한다)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4항”을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의2, 제8조의2, 제9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

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 의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중 “(제20조 관련)”을 “(제18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 안 자	과장	의회사무과장
	성명	김 유 미
	팀장	의정팀장
	성명	임 학 현
담당자	이 상 은	
성명·전화	(031-839-2527)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신고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② 확인·점검 내용	
---------------	--

③ 확인·점검 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 1) ○○언론사 요청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법인을 대리해 ○○에 관한 소송 수행
 3) ○○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④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⑤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⑥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⑦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p> <p>④ <u>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u></p> <p><신 설></p> <p>⑤ <u>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u></p>	<p>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부의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u></p> <p>⑤ <u>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u></p> <p>⑥ <u>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u></p>

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
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
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신 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생
략)

<신 설>

<신 설>

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
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
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
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별지 제6
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
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
장인 경우에는 담당관을 말한
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결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

② (생략)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제1항부터 제5항-----
-----.

제6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신 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

적 사용·수익 금지) ①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

<신 설>

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9조의2(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

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

<신 설>

<신 설>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신 설>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
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
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
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
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
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
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
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
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담당관을 포함하
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
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 의장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